

• 본내용은 최근 환경처가 발행한 '법령해석 질의 회신집'에서 발췌한 것임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p>• 시험가동기간중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처리</p> <p>가. 시험가동중에 있는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p>	<p>• 처리할 수 없다.</p> <p>이유 : 개선계획서는 적합평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이 배출 허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험가동 기간중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가동중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청이 제출된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및 검사신청서를 철회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합하게 개선보완한 후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와 검사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p> <p>[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p>
<p>• 폐수를 전량 재사용하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여부</p> <p>가. PVC파이프를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정상 단순냉각수를 배출하지 않고 계속 순환시켜 재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p>	<p>•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자가 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으로 측정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폐수의 오염도 측정을 생략할 수가 있음.</p>
<p>•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사례</p> <p>가. 방지시설 노후와 일부 고장 등으로 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될 경우에는 오염도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측정한다하더라도 신뢰성이 결여되는 바 이럴경우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았을 시에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p>나.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에 부착된 적산전력계 확인결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을 확인하였을 때 검체유무에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p> <p>다. 하나의 배출시설에 2개의 배출구를 설치하여 놓고 1개의 배출구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1개의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출구를 비밀배출구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방지시설 미설치로 보는지 여부</p> <p>라.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을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없이 단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정상가동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p>	<p>가. 방지시설 노후와 일부 고장 등으로 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오염도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방지시설 노후 또는 일부 고장에 대한 개선, 대체기간까지 배출기간으로 산정하여 배출부과금의 부과,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나. 방지시설에 부착된 적산전력계 확인결과 방지시설 비정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체유무에 관계없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p> <p>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여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출구가 허가사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미설치로,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배출구로 볼 수 있다.</p> <p>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할 구조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 비정상가동으로 보아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는 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 기계기구를 해당규모이하로 축소하였다면 이를 명령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p> <p>가.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 명령한 후 관계규정에 의거 명령이행 상태를 확인한 바, 당해사업장 내의 기계기구를 해당규모이하로 축소 변경할 경우 명령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p>•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변경하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규모이하로 변경한 경우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p>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 소음·진동업무편람 발췌)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1. 원자력발전소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장은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에 한하며, 원자력발전소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생활소음의 규제대상(법 제3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고무판 합성수지를 혼합 밀착하여 자전거 타이어 재료를 만드는 고무로라 혼합기가 소음·진동배출시설중 변속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정한 변속기는 동력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물건을 이송하거나, 혼합·교반·선별 등을 하게 하는 기계로서 벨트콘베어드럼, 교반기, 진동선별기 등을 말하며, 고무제품제조업에서 고무판과 합성수지를 회전하는 롤과 롤사이를 통과하여 혼합, 압착함으로써 고무벨트형의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는 압연기에 해당됨.
3. 공장에서 사용하는 20마력 이상의 Over Head Crane 등이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Over Head Crane 등 각종 크레인 은 변속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력합계 10마력 이상인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소음배출시설중 가항 제8호의 배출시설에 해당됨.
4. 자동차정비사업장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장은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에 한하므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정비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5.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을 설치 가능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후 관계규정에 의거 명령의 이행상태 확인한 바, 당해 사업장내의 기계·기구를 해당규모 이하로 축소 변경한 경우 폐쇄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변경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규모이하로 변경한 경우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6. 섬유가공업소에 설치예정인 변속기 75마력 2대 및 절단기 15마력 1대가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소음배출시설중 가항(4)호 및(8)호의 규정에 의거 10마력 이상의 절단기나 20마력 이상의 변속기는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됨.
7.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중이던 분쇄공정용 변속기를 폐쇄하고 동 변속기로 용해로용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위의 경우와 같이 폐쇄와 신설하는 시설의 동력규모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8. 민가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동력합계 1000마력 이상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때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주택, 상가 등 피해대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에 해당됨.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함
9.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작성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매주(주1회)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대상은 전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함. 즉 종별이나 주요시설 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1. 환경처고시 제1992-59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제7호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환경처고시 제91-48

환경관리인. 1992.11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2년 10월 9일

환경처장관

정화조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고시중개정

정화조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료채취장소 및 방법

시료는 정화조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의 입회하여 채취하여야 하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료채취 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처고시 제1992-60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성능 시험방법(환경처고시 제91-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2년 10월 9일

환경처장관

정화조의 성능시험방법 고시중 개정

정화조의 성능시험방법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중 처리방법별란의 “살수여상방법”을 “살수여상방법, 변형접촉포기방법, 혐기성산화형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식: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처고시 제1992-61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환경처고시 제1992-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2년 10월 9일

환경처장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고시중 개정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에 차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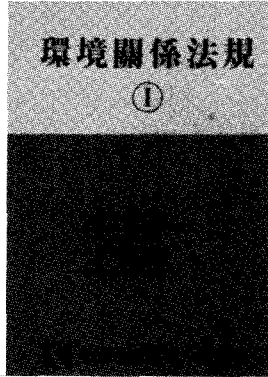
제2호중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동규칙(별표 10)의 1.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차. 한외여과막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스크린	1. 조스크린 및 세스크린을 조합한 구조로 함 2. 세스크린은 유량조정조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함 3. 유효간격이 50mm 정도인 조스크린을 설치하고, 세스크린은 눈크기가 80눈급인 자동스크린을 설치함 4. 세스크린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수로를 설치하여 눈크기가 0.2mm인 자동스크린을 설치함	
침사조	장기포기방법에 준함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에서 이송하는 시간당 오수량은 당해조에 유입하는 1일 평균 오수량의 24분의 1배이하가 되게 하고, 당해오수량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	기타 사항은 장기포기방법에 준함
포기조	1. 유효용량은 1일 평균오수량의 24분의 2에 상당하는 용량으로 함 2. 조내를 교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에어인젝터(AIR INJECTOR) 및 산기관을 설치하며, 용존산소가 항상 최소 2ppm이상 최대 4ppm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함 3. 혼합액농도(MLSS)는 5,000~7,000mg/ℓ, BOD오니부하는 0.1~0.5kg~BOD/kg-MLSS로 함 4. 조내의 혼합액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잉여오니를 오니농축지류조 또는 오니농축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함 5. 유효수심은 1.5m이상으로 하며, 조의 윗부분에서 50cm에 대한 부분은 당해 유효수심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6. 혼합액을 한외여과기로 이송하기 위한 순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순환펌프의 용량은 혼합액이 한외여과막을 지나는 속도가 2.5m/초이상 되도록 함	
한외여과기	1. 한외여과기는 평막형을 사용하며, 막의 재질은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유기물질의 오염에 강한 재질을 사용함 2. 막의 투과 유속(流束, FLUX)은 80ℓ/m ² ·시간이상으로 함 3. 막의 투과유속이 저하될 경우에 막의 세정을 위하여 약품세정조(차아 염소산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용액)를 설치함	
오니농축지류조	장기포기방법에 준함	
오니농축조 및 농축오니지류조	장기포기방법에 준함	

본연합회에서는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계법규(Ⅰ)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 환경관계법규(Ⅰ)
(4×6배판, 730쪽,
정가 15,000원)

서 적 명	정 가	발 행 처
• 환경관계법규(Ⅰ)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 소음·진동 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15,000원	본 연합회
• 환경관계법규(Ⅱ) • 폐기물관리법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법률 • 환경범죄 특별 조치법	12,000원	〃
• 대기오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 환경기술표준화	10,000원 8,000원 4,000원 5,000	〃 〃 〃 〃
• 폐수처리기술 • 폐기물처리기술(이론) • 폐기물처리기술(문제집) • 환경기술사 문제 해설집 •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문제집	5,000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14,000원	환경관리연구소 〃 〃 〃 홍 문 관

※ 구입처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 837-1964~5
환경관리연구소 ☎ 859-6333~5
홍문관 ☎ 718-9996~7

성능기준중 바, 살수형부패탱크방법, 사, 변형접촉포기방법 및 아, 산화형혐기성방법을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처고시 제1992-62호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자의 설계·시공능력의 보유증명서류(환경처고시 제91호-65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1992년 10월 9일

환경처장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자의 설계·시공능력의 보유증명서류고시폐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자의 설계·시공능력의 보유증명서류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처공고 제1992-34호

환경관리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0월 14일

환경처장관

환경관리공단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제정·시행으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회계처리 제도 등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중 기술 및 용자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추가함.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기금납입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기금 사용용도를 신설하고 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되 공단의 운영회계와 구분계리토록 하는 등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토록 함.

라. 임원 또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

환경관리인. 1992.11